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 
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300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  
복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 및 해지사유를 「사회복지사업법  
시행규칙」에 적합하도록 정비(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11조)

나.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및  
해임·해촉 사유 신설(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4조제3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“5년 이내” 를 “5년” 으로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단서 조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4항에 일치하도록 삭제하였으며,
-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임·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 부칙에서 신설 조항에 대한

시행 시기를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으며,

-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의 해지 사유는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음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, 수탁자선정심의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관 련 법 령

## ■ 『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』

**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**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1.5, 2012.8.3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11.5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11.5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3.7, 2008.11.5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
**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**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9.6, 2012.8.3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, 2012.8.3, 2016.8.3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8.3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- [제23조에서 이동 <2012.8.3.>]